㈜케이토토

소매인계약서

표준번호 :

개정일자 : 2018. 12. 31

총페이지 : 18 page (표지 및 목차 포함)

【목 차】

제1장 총 칙

제1조 계약의 목적

제2조 용어의 정의

제3조 소매인의 책임과 권한

제4조 소매인의 자격기준 및 역할

제2장 계약의 성립

제5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

제6조 계약의 양도 및 지위의 사용제한

제7조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

제8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

제9조 계약의 변경 및 보충

제3장 소매인 운영 및 관리

제10조 영업일의 준수

제11조 투표권 판매

제12조 구입취소

제13조 발매기 등 관련물품의 공급 및 관리

제14조 물류관리

제15조 판매촉진 및 건전화 활동

제4장 소매인 변경사항

제16조 소매인 변경사항

제17조 주소이전

제18조 임시철수

제19조 점내이동

제20조 정보변경

제21조 코드변경

제5장 금융거래 및 정산

제22조 비용납무의무 준수

제23조 판매금액 보증 및 권리실행

제24조 판매한도

제25조 판매금액 정산

제26조 판매수수료

제6장 부정행위 방지

제27조 교육훈련

제28조 부정행위 및 제한규정위반 금지

제29조 발권제한

제30조 영업지도 및 감사

제7장 위약벌 및 계약해지

제31조 위약벌

제32조 계약의 해지

제33조 소매인 제재심의위원회 운영

제34조 해지 등 계약종료 시 조치

제8장 기 타

제35조 기밀유지

제36조 손해배상

제37조 소송비용

제38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면책사항

제39조 조문해석

제40조 합의관할

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계약서

㈜케이토토(이하 '케이토토'라 함)와 ______(이하 '소매인'이라 함)는(은) 체육 진흥투표권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매인계약(이하 '본 계약'이라 함)을 체 결한다.

제1장 총 칙

제1조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케이토토가 소매인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함에 있어 케이토토와 소매인의 권리·의무와 책임사항 및 소매인의 영업활동 전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"체육진흥투표권"(이하 '투표권'이라 함)이란 국민체육진흥법(이하 '진흥법'이라 함) 및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(이하 '진흥법시행령'이라 함)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, 투표방법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
- ② "국민체육진흥공단"이란 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.
- ③ "소매인"이란 케이토토와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발매기 및 발매장비 등을 설치하여 투표권을 발매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④ "발매기" 란 체육진흥투표권 중앙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지정장소에서 투표권의 발매, 환급, 환불 및 취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⑤ "발매장비" 란 투표권의 발매, 환급, 환불 및 취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매기 및 보안장비 등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.
- ⑥ "환급금" 이란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⑦ "환불금" 이란 진흥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당해투표권이 발매 무효된 경우 구매자에게 그 구입액을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⑧ "가상계좌" 란 투표권 판매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케이토토가 소매인에게 부여하는 정산계좌를 말하다.
- ⑨ "정산금액"이란 소매인이 판매한 투표권 판매금액에서 환급금, 판매수수료, 쿠폰판매금액, 환불금 등을 제외하고 케이토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⑩ "판매한도"란 소매인이 결정한 판매금액 보증 한도까지 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케이

토토가 허용하는 금액을 말한다.

- ① "이행지급보증보험"(이하'보증보험'이라 함)이란 소매인의 판매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직접 케이토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.
- ② "동산종합보험"(이하 '동산보험'이라 함)이란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장비의 파손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토토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.
- ① "계약해지" 란 소매인의 귀책사유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매장비를 철수하여 발권 권한 등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"임시철수" 란 소매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매기를 케이토토에 임시적으로 일정기한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한다.
- ⑤ "주소이전" 이란 점포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.
- ⑥ "점내이동"이란 판매점 내 설치되어 있는 발매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- ☞ "정보변경" 이란 소매인의 상호, 점주명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.
- ⑧ "코드번호" 란 소매인에게 지급되는 발매기에 부여되는 판매점 고유번호를 말한다.
- ⑩ "코드변경"이란 제한된 규정 내에서 코드번호(판매점번호)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.
- ② "관련물품"이란 발매장비 외 투표권 판매와 관련하여 케이토토가 소매인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유체물을 말한다.
- ② "제작물"이란 원활한 투표권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케이토토가 제작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물품 등을 말한다.
- ② "영업지도"란 케이토토의 영업정책 및 관계법령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소매인에 대한 케이토토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현장관리감독 활동을 말한다.
- ② "계좌거래" 란 가상계좌 및 기타 금융계좌 등을 통해 판매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"소매인 선정기준" (이하 '선정기준' 이라 함)이란 발매장비 운영 및 투표권발매 등의 소매인 자격요건을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.
- ② "소매인운영 및 관리지침" (이하 '관리지침'이라 함)이란 본 계약 및 선정기준을 보완하고, 소매인의 영업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말한다.

제3조(소매인의 책임과 권한)

- ① 소매인은 본 계약을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고,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및 투표권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금품 또는 기타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.
- ③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건전한 레저문화정착 및 판매촉진을 위해 케이토토와 국민체육진 흥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제작물(포스터) 등을 판매점내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.

④ 소매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은 본 계약, 선정기준 및 그에 준한 관리지침에 명시된 자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매인의 자격기준 및 역할)

- ① 소매인은 민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.
- ② 소매인은 발매장비 설치 및 베팅가능 공간 등 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는 환경을 항시 유지하여 야 하며, 케이토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발매장비 및 제작물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철저히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- ③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판매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홍보활동 및 신규고 객 유입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투표권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건전한 발매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투표권 판매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, 소매인은 고객의 외상구매 등 일체의 요구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소매인은 케이토토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일정한 교육에 반드시 참석 또는 이수하여야하고 구매자에게 투표권사업 관계법령, 발행상품 및 구매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한다.

제2장 계약의 성립

제5조(계약체결 및 계약기간)

- ① 소매인과 케이토토는 본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, 소매인은 직접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 증서로서 인증 받아야 한다. 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영업정보를 갈음하고, 이에 소매인은 해당정보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. 소매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손해는 소매인이 부담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- 1. 사업자등록증명원
- 2. 주민등록등본(워본)
- 3. 임(전)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(본인 소유 시)
- 4. 상기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각 1부를 판매점내 보관
-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케이토토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위·수탁계약기간이 상기 기간 내 만료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
- ③ 케이토토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 중인 소매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로 차기년도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 계약해지 대상 소매인에게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

는 것으로 간주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소매인 최초 선정 당시의 선정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
- 1. 판매점 정보 일치 여부
- 2.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소매인 자격 유지 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
- 3. 소매인의 일반과세 유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
- 4. 계약자 본인의 운영 여부(3자 운영시 관련서류 일체)
- 5. 케이토토 임직원,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
- 6. 발매장비 및 투표용지 관리, 필수포스터 부착 여부
- 7. 외부홍보물(POSM) 부착 및 외부가시성
- ④ 케이토토는 제3항의 평가를 위하여 소매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에 소매인 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하며, 케이토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케이토토는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으로 선정된 소매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.
- ⑥ 본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케이토토 또는 소매인은 본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그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6조(계약상 양도 및 지위의 사용제한)

- ① 소매인은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대여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- ② 소매인은 본인이 판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고령, 장애, 건강, 일일 근무시간 고려 등으로 직접운영이 불가한 경우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, 이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판매점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.
- 1.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)
- 2. 고용계약서
- 3. 금융기관을 통한 급여이체 영수증 또는 급여지급 관련 기타 증빙서류 등
- ③ 소매인의 직접운영이 불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을 판매점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)

소매인은 케이토토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상표(브랜드), 상호, 의장, 캐릭터 등을 사용·제 작하는 경우 반드시 케이토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적재산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8조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)

케이토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별지1의 동의서를 소매인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으며, 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소매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에 소매인은 케이토토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계약의 변경 및 보충)

- ① 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의 지시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, 위·수탁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.
- ② 케이토토와 소매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변경·적용하고, 소매인은 이를 본 계약을 보충하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 다.
-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다.

제3장 소매인 운영 및 관리

제10조(영업일의 준수)

- ① 소매인은 투표권 발매시간에 준하여 일일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소매인은 일정기한 동안 발매기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투표권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휴무개시 7일전까지 케이토토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일정기한은 케이토토와 사전협의 없이 영업일기준 연속 10일을 초과한 기간으로 하고, 사전승인은 별지2의 휴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케이토토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 단, 휴무신청기간은 본 계약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.

제11조(투표권 판매)

- ① 소매인은 투표권 구매자가 발권을 희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.
- ② 소매인은 투표권 적중자가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흥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처리된 투표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정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소판매금액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.
- 1. 최소판매금액 : 분기 총 300만원 이상
- 2. 투표권 판매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
- 3. 소매인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를 하지 못하여 별지2의 휴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시 철수 기간이 해당 분기 영업일기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
- 4. 분기의 기준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한다.

제12조(구입취소)

- ① 정상적으로 발권된 투표권은 취소할 수 없다. 단, 투표권의 비정상적인 발권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처리가 가능하다.
- 1. 발권 후 20분이내 UHD(080-200-4900)로 접수
- 2. UHD 접수가 불가한 경우 : 지역책임자 유·무선 전화접수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권은 취소가 불가하다.
- 1. 발권 후 20분을 초과한 경우
- 2. 발매마감 이후
- 3. 비정상 투표권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소매인이 부담한다.

제13조(발매기 등 관련 물품의 공급 및 관리)

- ① 케이토토는 소매인에게 발매기 및 기타 부속장비를 계약기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며, 그 소유 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.
- ② 발매기 운영에 따른 통신비(회선료, 모뎀임대료 등)는 케이토토가 부담하고, 전기료를 포함한 점포 내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소매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케이토토는 정기 또는 비정기로 소매인의 투표권사업 관련물품 및 서비스 상태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, 소매인은 케이토토의 지시에 따라 발매기 및 관련물품 등을 유지·관리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
- ④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통신사에서 임대한 임대장비(유/무선 모뎀 등)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케이토토는 소매인에게 임대장비 손해배상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4조(물류관리)

- ① 케이토토는 소매인에 지급되는 각종 제작물 등을 무상지원하고, 택배를 통해 배송한다.
- ② 소매인은 투표용지(슬립용지) 및 투표권용지(롤영수증)의 필요수량을 매주 월요일 발매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소매인이 신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매인이 책임을 부담한다.
- ③ 소매인은 판매점내 투표용지(슬립용지) 및 투표권용지(롤영수증)의 적정수량 재고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기준은 케이토토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15조(판매촉진 및 건전화 활동)

① 케이토토는 광고, 선전, 판촉 및 건전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고,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지정하는 시기 및 위치에 판촉물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. 단, 소

매인은 케이토토와 상호 합의에 따라 위치 및 부착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케이토토는 투표권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광고, 홍보, 마케팅, 불법도박예방 및 건전화 활동을 전담하여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인과의 공동마케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소매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장 소매인 변경사항

제16조(소매인 변경사항)

- ① 소매인은 소매인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- 1. 지역책임자를 통하여 변경사항 신청 및 접수
- 2. 제출서류 : 변경사항 신청서 및 본 계약에 명시된 관련서류 일체
-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에 따르고, 세부절차는 관리지침에 의한다.

제17조(주소이전)

- ① 케이토토는 소매인이 주소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예정주소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적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.
- ② 케이토토의 현장평가는 이전예정주소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- 1. 이전예정지 주변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
- 2. 이전예정지 주변 판매점 수량(밀집도)
- 3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여부
- 4. 이전예정 매장규모 및 주변 환경 등
- ③ 케이토토는 현장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기준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주소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. 단, 현장평가 결과 부적격 평가를 받은 소매인이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 케이토토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.
- ④ 주소이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- 1. 주소이전 희망일 14일전 변경주소지에 대한 평가요청
- 2. 소매인 계약서 및 관리지침에 준하여 이전예정지 평가
- 3. 승인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임대차계약서사본(등기부등본) 제출
- 4. 소매인은 아래 케이토토 지정계좌에 해당비용을 입금

지정은행	입금계좌	입금액(원)	예금주
IBK기업은행	089-075631-01-047	₩69,300	㈜케이토토

- ⑤ 소매인의 주소이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역 내로 제한한다.
- 1.강원 2.서울 3.인천·경기 4.대구·경북 5.부산·울산·경남 6.광주·전북·전남 7.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 8.제주
- ⑥ 신규소매인은 최초 발매기 설치일로부터 180일간 주소이전을 할 수 없다. 단, 건물 신(증)축, 리모델링, 재개발 등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서류 및 증빙제출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.

제18조(임시철수)

- ① 소매인의 사정으로 상당기간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발매장비를 일정기간 철수해야 하는 경우 변경사항 신청을 통해 임시철수가 가능하며,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- 1. 임시철수 기간 : 최대 60일
- 2. 휴무신청 기간 : 최대 180일(임시철수 기간 포함)
- ② 소매인의 질병 및 장기요양 또는 건물신축, 증축, 리모델링, 재개발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소매인은 관련서류 및 증빙 제출을 통해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부적격증빙 또는 부적절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케이토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임시철수 후 발매기를 재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이 변경사항 신청을 통해 재설치가 가능하며, 소매인은 아래 케이토토 지정계좌에 해당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.

지정은행	입금계좌	입금액(원)	예금주
IBK기업은행	089-075631-01-047	₩69,300	㈜케이토토

④ 신규소매인은 최초 발매기 설치일로부터 180일간 임시철수를 할 수 없다. 단,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관련서류 및 증빙제출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.

제19조(점내이동)

사업장 내 발매장비의 위치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사항 신청을 통해 위치변경이 가능하다. 단, 소매인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소매인이 부담한다.

제20조(정보변경)

- ① 소매인은 본 계약 및 선정기준에 준하여 소매인 자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, 케이토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변경한 소매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.
- 1. 관련규정에 적합한 정보로 변경요청
- 2.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치
- 3. 제2호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치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경우 계약해지

② 케이토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매인은 별지3의 SMS수신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제21조(코드변경)

- ① 케이토토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코드변경을 불허한다.
- 1. 소매인이 사망 등으로 안정적인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계약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 하는 경우
- 2. 소매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점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드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여야한다.
-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신규소매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, 소매인의 판매점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기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.
- ③ 코드변경 시 판매점 운영에 관련된 제28조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벌 누적횟수 및 기타벌점, 영업지도누적횟수 등의 모든 이력을 승계한다.

제5장 금융거래 및 정산

제22조(비용납부의무 준수)

- ① 소매인은 발매기보증금, 동산종합보험료 및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1. 발매기보증금 납부액 금 10만원(계약갱신의 경우 기 납입한 보증금으로 갈음)
- 2. 동산종합보험료는 연도별 금융사 납부조견표에 따라 차등 적용
- 3.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은 연도별 차등 적용
- ② 동산보험의 보장범위는 발매장비의 파손 및 도난 등 해당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범위로 제한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1. 금융기관에서 지정하는 보장범위 이외의 파손, 망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
- 2. 분실의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소매인이 전액 부담한다. 단,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.

제23조(판매금액 보증 및 권리실행)

① 소매인은 투표권 판매금액을 보증하기 위하여 케이토토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케이토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② 보증보험의 보증액은 케이토토 및 소매인의 사업환경 변화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. 단, 신규소매인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금 300만원으로 제한하며 발매개시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보증보험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소매인은 보증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피보증인의 명의가 케이토토일 것
- 2. 보증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할 것
- 3. 보증보험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소매인의 의무와 동일한 내용일 것
- ④ 채무불이행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소매인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- ⑤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금액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케이토토는 판매금액 보증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매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24조(판매한도)

- ① 소매인의 판매한도는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. 단, 소매인이 가입금액 증액(상향조정)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보증보험 가입 시 소매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증액
- 2. 케이토토와의 협의를 통한 보증보험 가입금액 증액신청
- ② 케이토토는 전항의 소매인의 증액신청에 대하여 지정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매인의 판매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.

제25조(판매금액 정산)

- ①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정한 판매금액 정산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케이토토가 부여한 가상계좌는 소매인 본인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상계좌를 관리하여야 한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소매인 개인이 부담한다.
- 1. 제3자에게 가상계좌 누설금지
- 2. 제3자 입금이 추정되어 케이토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서 제출
- ③ 소매인은 일 판매 마감된 누계 정산금액이 보증금액의 80%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상발매를 위해서는 가상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여야 하며, 미입금시 케이토토는 판매금액 입금 확인 시까지 일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④ 소매인은 매주 화요일 판매 마감된 누계 정산금액이 보증금액의 80%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상계좌에 케이토토가 정한 시각까지 정산금액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한다.
- ⑤ 케이토토는 소매인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매인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한다.

- ⑥ 납부일 현재 정산금액 미입금분이 있는 경우 정산대금 입금액은 미입금분부터 충당한다.
- ⑦ 소매인이 정산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송금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소매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⑧ 본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기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해지 이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며, 환급 보험료는 총 납부액에서 정식 해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종료일까지의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 단, 환급 보험료의 지급은 케이토토가 아닌보험 가입업체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6조(판매수수료)

케이토토는 소매인에게 투표권 판매금액의 5.97%(VAT 포함)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. 단, 진흥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당해 투표권이 발매무효가 된 경우 동 판매금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부정행위 방지

제27조(교육훈련)

- ① 소매인은 케이토토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하는 '정기교육' 각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케이토토가 실시하는 '소양교육' 및 '심화교육' 대상자로 선정된 소매인은 반드시 해당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장의 주소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실시하는 '보호구역 내 판매점 대상 교육'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참석 또는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 변, 입원 및 가료를 요하는 질병, 상해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는 경우 차회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28조(부정행위 및 제한규정위반 금지)

- ① 소매인은 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구매금지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 및 환불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아울러 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여부가 분명치 않을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청소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소매인은 투표권 위·변조행위를 금지한다.
- ③ 소매인은 진흥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매회차별 1인당 금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소매인은 판매점 내·외에 불법적인 사행성게임기운영 및 불건전한 도박행위(포커 및 화투

게임 등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소매인은 반드시 고객과 대면하여 판매하여야 하며, 계좌거래 및 통신판매 등 대면판매 이외의 기타 판매행위는 금지한다.
- ⑥ 소매인은 본 계약 및 관련규정을 벗어나는 발매 및 취소행위를 일체 금지한다.
- ⑦ 소매인은 투표권 관련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·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⑧ 케이토토 명의로 제공된 통신회선은 발매기 운영 이외의 개인용도 사용을 불허한다.
- ⑨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 위반으로 케이토토와 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판매점에서의 운영 및 가맹본사를 통한 발매기 신청을 불허하며, 가맹점에서의 운영도 금지한다. 케이토토는 이를 위반한 소매인이 최초 적발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매인은 케이토토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① 케이토토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를 누적 관리하여야 하고, 누적기간은 적발일 (사실확인서 수취일)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단, 누적기간은 2019년부터 기산한다.
- ① 위반행위 적발 소매인이 위약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, 미 이행된 위약벌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적용한다.
- ② 케이토토는 소매인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매인은 소명을 요구한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. 단, 소매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케이토토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제29조(발권제한)

케이토토는 소매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을 기준으로 발권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소매인은 케이토토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30조(영업지도 및 감사)

- ① 케이토토 및 국민체육진홍공단은 소매인을 대상으로 규정준수 및 정책이행 등에 대한 영업지도와 감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에 소매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케이토토의 영업지도는 반드시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, 영업지도 활동보고서를 작성 하여 각 지사에서 보관한다.

제7장 위약벌 및 계약해지

제31조(위약벌)

① 소매인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,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6호에 따른다.

- 1. 제28조제8항에 따라 통신회선을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
- 2.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, 환급금 및 환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30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케이토토의 영업지도 및 감사에 소매인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케이토토가 지정하는 필수부착물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연간 누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.
- 가. 1회: 구두경고
- 나. 2회 : 영업정지 7일
- 다. 3회 : 영업정지 14일
- 라. 4회 : 영업정지 30일
- 마. 5회: 계약해지
- ②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.
- 1. 1회 적발 : 소양교육 참석 및 영업정지 30일
- 2. 2회 적발 : 계약해지
- ③ 제28조제4항에 따라 판매점 내·외에서 사행성게임기를 운영하거나 불건전한 도박행위로 인하여 적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1회 적발 : 영업정지 30일
- 2. 2회 적발 : 계약해지
- ④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.
- 1. 1회 적발 : 소양교육 참석 및 영업정지 40일 또는 계약해지
- 2. 2회 적발 : 계약해지
- 3. 단, 제28조제3항과 제5항을 동시에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약벌은 본 항의 조치에 따른다.
- ⑤ 케이토토는 제27조에 해당하는 교육에 참석 또는 이수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.
- 1. 제27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
- 가. 1회 미이수 : 영업정지 5일
- 나. 2회 미이수 : 영업정지 10일
- 2. 제27조제2항의 소양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
- 가. 1회 미참석 : 소양교육 참석 때까지 영업정지
- 나. 2회 미참석 : 계약해지
- 3. 제27조제2항의 심화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
- 가. 1회 미참석 : 영업정지 5일
- 나. 2회 미참석 : 영업정지 10일

- 4. 제27조제3항의 보호구역 내 판매점 대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
- 가. 1회 미이수 : 영업정지 5일
- 나. 2회 미이수 : 영업정지 10일
- ⑥ 케이토토는 제28조에 따른 위약벌 적용 시 반드시 관련근거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조치하여야 하고, 케이토토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소매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매인이 부담한다.

제32조(계약의 해지 및 발매기 철수)

- ① 케이토토는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발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발매기를 철수한다.
- 1. 제10조제3항과 같이 소매인이 케이토토와의 사전협의 없이 영업일기준 연속 10일을 초과하여 투표권 판매 및 발매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투표권 판매금액이 케이토토가 정한 최소판매금액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
- 3. 제17조제2항과 같이 케이토토의 <mark>승인을</mark>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상의 자격기준에 준하지 아니하고 사업정보를 변경한 경우
- 4. 제18조에 따라 임시철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설치가 불가한 경우
- 5. 제20조에 따라 적합한 정보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. 단, 코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- 7. 제27조제2항의 소양교육을 2회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경우
- 8.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청소년 판매 및 투표권 위·변조하여 적발된 경우
- 9.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적발일(사실확인서 수취일)로부터 2년간 3회 이상 누적된 경우
- 10. 제28조제6항에 따라 본 계약 및 관계규정을 벗어나는 발매 및 취소행위에 적발된 경우
- 11. 제28조제7항에 따라 투표권 관련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·알선하는 행위에 적발된 경우
- 12. 제28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거나 고용한 사실이 연2회 적발된 경우
- 13.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연간 총4회를 초과하여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14. 발매기를 담보로 불법전매 및 제3자 운영이 적발될 경우
- 15. 소매인이 연간 12회를 초과하여 정산의무를 위반한 경우
- 16. 진흥법 제26조 위반 또는 제26조제1항의 금지 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
- ② 케이토토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소매인이 케이토토에게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

- 2. 소매인이 본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에 규정된 책임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- 3. 소매인에 대하여 압류(가압류), 가처분, 민사집행법, 국세징수법에 기한 강제집행, 경매, 파산,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4.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건 등에 가담 또는 동조하는 경우
- 5.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제기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케이토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이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6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케이토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당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7. 본 조 제1항제16호에 해당하지 않는 진흥법 및 진흥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8. 소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토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9.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연관하여 별도의 영리사업을 추구한 경우(유료 정보사이트 운영 등)
- 10. 소매인이 케이토토와 계약관계에 있는 체인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11.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투표권 사업이 중단될 경우

제33조(소매인 제재심의위원회 운영)

- ① 케이토토는 제2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위반행위에 적발된 소매인을 대상으로 제재심의 위원회(이하 '위원회') 심의·의결을 하여야 하며, 심의 결과에 따라 위약벌 부과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

제34조(해지 등 계약 종료 시 조치)

- ① 발매기 철수를 희망하는 소매인은 반드시 발매기철수요청서(이하 '철수요청서'라 함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소매인의 사망 또는 계약사항위반으로 인한 발매기 철수 시 철수요청서 내 소매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② 소매인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투표권 판매행위 등의 권리를 상실한다.
- ③ 케이토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본 계약에 따라 발매기 회수 및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매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, 케이토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아울러 소매인의 행위로 인하여 케이토토에게 전가된 피해 및 손해는 소매인이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발매기 철수대상의 경우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회수를 요구하는 일체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즉시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, 발매기 철수 관련 소요비용은 소매인이 전액 부담한다.
- ⑤ 소매인은 발매기 철수가 완료된 사업장에서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부당하게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·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
제8장 기 타

제35조(기밀유지)

소매인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투표권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각종 기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6조(손해배상)

케이토토와 소매인은 본 계약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37조(소송비용)

- ① 소매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케이토토가 배상청구 또는 기타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소매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송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케이토토가 배상청구 또는 기타의 소송을 제기당하거나,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당사자 참가, 보조참가 등을 통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액 소매인이 배상한다.

제38조(국민체육진흥공단의 면책사항)

케이토토가 소매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39조(조문해석)

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상·관례에 따른다.

제40조(합의관할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케이토토 및 소매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, 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케이토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계약 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케이토토 및 소매인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 통씩 보관하다.